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손윤목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이 조례안은 2016년 4월 18일 윤은희 의원 등 7명이 발의하여 2016년 4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에서는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독립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등은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조례에서 분리 발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통합 발주되는 사례가 많아 하도급으로 인한 공사의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 책임문제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을 확보하고 기계설비업의 발전을 위하여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설공사에서 기계설비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함.
(안 제2조 및 제3조)
- 기계설비의 품질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기계설비의 분리발주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4. 검토의견

- 금번 제정조례안은 공공건축물 공사를 발주할 때에 기계설비공사를 건설공사에서 분리하여 발주하게 함으로써 기계설비의 품질향상과 부실시공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먼저 조례의 적법성을 검토해보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에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분할계약을 금지하고 있으나 단서규정을 두어서 분할계약을 허용하고 있으며,
 - 조례안 제5조에서는 법령과 부합하도록 기계설비 분리발주를 규정하였음.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부합한다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을 다시 조례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실익은 충청북도가 공공건축물 공사를 시행할 경우 관행에 의한 통합발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과 저가 하도급,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등의 병폐를 해소하자는 취지이며 이는 도내 전문건설업체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로 종합건설업체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를 배제하고 하도급 단가에 가까운 직접공사비로 인하여 통합발주보다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충청북도에서 공사를 분리발주를 할 경우 공사 관리 부담, 다수의 공종 패키지로 인한 공사 지연, 복합하자 등 계약분쟁에 관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1부. 끝.